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856 |
|----------|------|

발의년월일 : 2009. 6. 10.
발 의 자 : 성준모 의원 외 6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의 조문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7조, 제27조).
- 기 개정된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28조).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6조”를 “제41조”로 하고 “제19조의 2”를 “제39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하며 제4호 중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

제27조 제7항 중 “제20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8조 중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7조(과태료)</p> <p>①~⑥(생략)</p> <p>⑦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과 안산 시 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되 그 세부 절차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은 부과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⑧ (생략)</p> | <p>제27조(과태료)</p> <p>①~⑥(현행과 같음)</p> <p>⑦ ----- 제27조의 ----- ----- ----- ----- -----. ⑧ (현행과 같음)</p> |
| <p>제28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안산시의회위 원회조례</u>와 <u>안산시의회회의규칙</u>을 준용한 다.</p> | <p>제28조(준용규정)----- ----- 「<u>안산시의회교섭단 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u>」 와-----.</p> |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 1991.04.12 조례 제0402호

개정 1992.03.18 조례 제0441호

전문개정 1994.11.23 조례 제0564호

개정 1999.05.10 조례 제0836호

개정 2000.03.10 조례 제0904호

(일부개정) 2002.01.15 조례 제1004호

(일부개정) 2006.04.07 조례 제12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9.05.10, 개정 2000.03.10>

③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시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위원회등)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께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산시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안산시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안산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2006.4.7>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항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증언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증언등의 출석요구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출석 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규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질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증언범위, 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본 회의, 감사또는 조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③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여비등 비용지급)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등에 대하여는 여비등 비용을 지급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안산시의회의원 및 시 산하공무원

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동조 동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동조 동항 제5호가 정하는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

한 자

- ③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 ④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를 준용한다.<개정 1999.05.10>
- ⑤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 한다.
- ⑥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불축식등의 통보) 의장은 제11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20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제척과 회피)
 -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안산시의회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고발) ①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접수시킨다.

제27조(과태료)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

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2.01.15>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신설 2002. 01.15>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 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5>

④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사실과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01.15>

⑤ 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01.15>

⑥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내용과 증인의 의견진술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5>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등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과 안산시시 세부과정수규칙을 준용하되 그 세부절차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은 부과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2.01.15>

⑧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01.15>

제28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2.01.15>

제29조(의회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01.15>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